

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 . . .
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 통폐합에 따라 상위법 명칭을 현행화하여 현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, 「구미형 일자리」 노·사·민·정 상생협약 내용 변경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상위법 통폐합에 따른 상위법 명칭 현행화(안 제1조, 제2조)

나. 담당(계) 명칭 변경(안 제14조)

다. 노·사·민·정 상생협약 내용변경에 따른 상생협력기금 운용방법 변경(안 제19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정책기획과,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구미형 일자리 지원 및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, “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”을 “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의2 제1항”을 “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항”으로 한다.

제14조 중 “담당계장”을 “담당팀장”으로 한다.

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한다”를 “재단법인이 관리·운용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재단법인 설립 및”을 “상생협력기금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의거 추진되는 <u>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</u> 과 동법에 따라 선정된 구미형 일자리 사업을 지원·촉진함으로써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----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----- -- <u>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제2조(정의) ----- ----- -----.
1. “상생형지역일자리”란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에 의거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·사·민·정의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, 투자계획, 복리후생,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정부 사업을 말한다.	1. ----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2. “구미형 일자리”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신산업분야 투자유치를 위해 지역 노·사·민·정의 상생협약으로 합의한 대	2. ----- ----- ----- -----

· 중소기업간 상생, 지역상생, 노사상생, 정부지원 등의 상생 요소를 기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, 「국가균형발전 특별법」 제11조의2 제1항에 의거 선정된 일자리 사업을 말한다.

3. ~ 7. (생략)

제14조(간사 등)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, 각각 구미형 일자리 관련 부서장과 담당계장이 된다.

제19조(상생협력기금) ① 시장은 상생협약에 따라 추진되는 상생협력기금조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기금을 조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, 해당 기금은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용한다.

1. ~ 3. (생략)

② 재단법인 설립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 의결로 정한다.

----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9조제1항-----.

3. ~ 7.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간사 등) -----

----- 담당팀장-----.

제19조(상생협력기금) ① -----

---- 재단법인이 관리·운용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② 상생협력기금 -----

-----.

관계법령

□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」

제29조(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의 선정·지원 등) ① 국가는 지역의 투자를 촉진하고 지역일 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, 기업, 근로자, 주민 등 다양한 경제주체 간 근로여건, 투자계획, 복리후생 또는 생산성 향상 등에 대한 합의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사업(이하 “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”이라 한다)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② ~ ④ 생략

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소관 업무에 따른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⑥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(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을 말한다)은 제4항에 따라 선정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대한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기관·법인·단체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. 이 경우 해당 출자·출연을 받은 기관·법인·단체에는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적용하지 아니한다.

⑦ 생략

⑧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행정구역에서 상생형지역일자리사업이 선

정된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실적·지원효과 및 다음 연도 지원계획
등을 매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⑨ ~ ⑫ 생략

소 관 부 서		일자리경제과
입 안 자	과 장	박 영 희
	팀 장	최 연 호
	담 당 자	이 태 인 (480-2605)